

2023년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사업」 참여자 3차 모집 공고

강원도 미취업 청년들의 안정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통한 일자리시장 조기 진입을 유도하는 2023년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사업(구,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3차 모집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도내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06월 02일

강원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 시, 지원 가능
- (주 소 지) 신청일 이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
 - (나 이)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 (졸 업) 신청일 기준 최종학력 졸업(중퇴)자
 - * 재학생의 경우,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2023년 8월 졸업예정자) 가능
 - (취업상태)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
 - * 미취업 기준 : 주36시간 미만 근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 (가구소득) 연령별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요건 충족

가구소득 인정액	연령 기준	기준중위소득 범위
	만18세~만34세	120% 초과~180% 이하
	만35세~만39세	180% 이하

○ 지원내용 * 재참여 제한 3년

- (취업준비 쿠폰)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 (포인트)지원
* 자산성 물품(전자기기, 가전제품, 기타 장비 등) 구매 및 구직활동과 무관한 사용 제한
- (취업성공금) 지원금 수급 중 취창업하여 3개월간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원 지원
* 쿠폰을 6개월 전액지원 받고 취·창업하거나 도외로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는 제외
- (취업지원 서비스) 취업컨설팅, 역량강화 교육 등 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

○ 지원방법 : ① 온라인 포인트로 사용, ② 체크카드 사용 후 환급(현금)방식

- (첫 달) 구직활동계획서에 의거 쿠폰(포인트) 선 지급
- (둘째 달 이후) 매월 구직활동보고서 제출 및 확인 후 지급
*보고서 미제출 또는 반려 누적 시, 쿠폰(포인트) 미지급

○ 신청기간 : '23. 6. 7.(수) 09:00 ~ '23. 6. 20.(화) 23:59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강원일자리정보망 <https://job.gwd.go.kr/gwjob>)

○ 선정방법 : 지원대상 요건 심사 후 적격 여부 판단

* 선착순 접수가 아니며, 최종제출 서류를 자격요건 기준으로 심사하여 선정합니다.

2. 신청자격

* 신청 자격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해야 합니다.

○ 신청일 이전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

- 거주지 요건은 지원금을 받는 모든 기간동안 충족되어야 하며,
지원금을 받는 도중에 도외로 거주지 변경 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 공고일 기준(23.6.2.)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1983.06.03.~2005.06.02)

○ 신청일 기준, 최종학력 졸업(중퇴)자

- 2023년 8월 졸업 예정인 재학생 및 원격대학, 학점인정제 과정이수의 경우 참여 가능

○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

- 미취업기준: 신청일 기준 월 평균 주 근로시간 36시간 미만이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주 36시간 이상 근로 시, 취업자로 간주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자로 간주

○ 기준중위소득은 연령별 소득범위 구간 요건 충족

- 공고일 전 3개월 (23년 3월~5월) 가구원의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부과)액 **합산 금액**이 연령별 각 [표1]~[표2]의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표 범위에 해당해야 함

* 가구원 산정은 가족관계증명서의 가구원 기준(등본 기준 아님)

※ 만18세~34세의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120% 이하지만 재산기준 미달 및 공무원 시험 준비 등으로 정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선발이 제외된 대상은 관련 증빙자료를 (불인정 통지서와 최근 1년간 공무원 시험 접수증) 제출하여야 지원 가능합니다.

* 불인정 통지서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심사 결과, 수급 자격 불인정 통지서를 의미하며, 수급 자격 모의 산정 결과로는 증빙되지 않습니다.

* 단, 불인정통지서의 사유 중 국민취업지원제도 기참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 기간 이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가능)

[표1] 만18세~34세 :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20%초과 ~ 180%이하 건강보험료

(단위 : 원/월)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기준중위소득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120% 건강보험료	직장	88,754	147,280	189,109	230,142	272,226	309,670
	지역	26,673	105,944	147,855	196,236	249,281	293,801
	혼합	-	148,789	191,845	233,952	278,492	320,126
180% 건강보험료	직장	132,975	222,624	284,769	346,067	434,962	476,875
	지역	85,637	187,378	264,991	335,569	436,179	481,248
	혼합	-	226,361	291,898	359,887	476,875	521,613

[표2] 만35세~39세 :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건강보험료

(단위 : 원/월)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기준중위소득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180% 건강보험료	직장	132,975	222,624	284,769	346,067	434,962	476,875
	지역	85,637	187,378	264,991	335,569	436,179	481,248
	혼합	-	226,361	291,898	359,887	476,875	521,613

* 건강보험료는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만 해당됨

*** 신청자의 가구소득과 건강보험료 기준표 간 확인 방법**

(예시) 신청자가 만32세 미혼이고 가구원이 3인(본인+부+모)일 때, 공고일 전 3개월 부(父)는 직장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 모(母)는 지역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 본인은 부(父)의 피부양자로 되어있을 경우

(확인) 부(직장)의 공고일 전 3개월 평균 납부액 + 모(지역)의 공고일 전 3개월 평균 납부액
= 3인 혼합액 기준

□ 가구원 수 및 가구소득 확인 범위 기준 *세부 예시는 [붙임1] 참조

※ 가구원은 등본이 아닌 가족관계증명서 기준입니다.

*** 신청자가 미혼인 경우**

가구원 수는 기본 3인(부, 모, 본인)

형제·자매 포함 여부는 선택사항, 조부모는 미포함

(가구의 소득에 따라, 형제·자매 포함 여부 선택 가능)

*** 신청자가 기혼인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와 동거 중인지, 아니면 별도 가구로 독립해 배우자 및 자녀와 동거 중인지에 따라 달리 산정

< 지원제외 대상 >

- 실업급여 및 생계급여 수급자
- 주36시간 이상 근로를 하고 있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 공무원, 임용고시 등에 최종 합격하여 발령 대기 중인 경우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타 지자체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 √ 동시참여 불가, 순차참여 제한 기간 6개월 경과 후 참여 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중단한 경우에도 6개월 경과 후 참여 가능)
 - √ 유사사업은 월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급금액 300만원 이상인 경우
- 학업 또는 군복무, 건강 등의 사유로 취업이 어렵거나 취업 의사가 없는 경우
 - √ 신청일 기준 고등학교 이하, 대학교, 대학원 등 학교에 재(휴)학중 또는 졸업유예자
- 2020년~2022년도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수혜자(참여자)
 - √ 2020년도 참여자의 경우 재참여 3년 제한 적용으로 2024년부터 참여 가능

《타제도 중복참여 가능 여부》

사업명	동시참여		순차참여	
	가능	불허	가능	
			종료 후	6개월 경과 후
생계급여		○	○	

실업급여			○	○ (종료 다음 달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		○
내일배움카드	카드 발급 후 훈련 미참여	○			
	훈련 참여		○		○
기타 정부지원 훈련			○		○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주 근로시간 36시간 미만	○			
	주 근로시간 36시간 이상		○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타 지자체 유사사업 등			○		○

3. 신청방법 및 절차

- ① 강원일자리정보망(<https://job.gwd.go.kr/gwjob>) 홈페이지 접속하여
개인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 후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만 가능

※ 강원일자리정보망 구직등록 방법 ※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인재정보관리]-[내 인재정보등록] 클릭

(강원일자리정보망에 구직등록이 안되어있을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② 홈페이지 상단의 “지원정책” 선택 후, “청년구직활동지원” 클릭
③ 온라인 신청서 작성(구직활동계획서 등) 및 제출서류 첨부 후 최종 제출

4.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필수 제출서류 9종>

제출서류		유의사항
필수	① 가족관계증명서	- 가구원 모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나오게 발급 - 형제·자매를 가구원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본인 기준으로 발급 - 형제·자매를 가구원에 포함시킬 경우 부모님 기준으로 발급 - 기혼자가 부모님을 가구원에 포함시킬 경우 등본 추가 발급 - 가족관계증명 관련 사례별 추가 구비서류 목록은 【붙임 2】 참조
	② 졸업(제적)증명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발급 - 가장 마지막으로 입학한 학교를 최종학교로 간주함

선택		(검정고시의 경우, 검정고시 합격증 첨부) - 최종학년 최종학기 재학생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재학생은 23년 8월 졸업예정자만 신청 가능)
	③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나오게 발급 - 주소변동이력(5년 이상),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최종 전입일이 확인되어야 하며, 여러 장일 경우 모두 다 첨부 ※ 등본이 아닌 초본으로 제출
	④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가구원 모두의 자격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발급 - 미혼의 경우 부·모·본인 자격확인서 첨부 필수 - 기혼의 경우 본인·배우자 자격확인서 첨부 필수
	⑤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공고일 전 3개월(23년 3월~5월)분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가구원 모두의 납부확인서 발급·첨부 - 보험료 미납으로 납부확인서가 미발급될 경우, 납부고지서 제출
	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가구소득을 산정하는 가구원 모두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 *가구원 3인(부·모·본인) 산정 시, 부·모·본인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⑦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상용)	- 신청일 기준 5년 이상의 이력을 포함하여 발급 ※ 고용보험으로 조회하여 발급 - 가입 이력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내역이 없다는 서류 첨부 (반드시 인적사항과 발급일자 표시되어야 함)
	⑧ 개인정보동의서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첨부 【서식 2】 - 가구원에 포함된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며 미동의시 탈락 처리 (예) 가구원으로 부, 모, 본인을 넣었다면 개인정보동의서에도 부, 모, 본인의 동의가 모두 필요함.
	⑨구직활동계획서	- 온라인 신청 시 작성, 정성평가 심사 시 평가항목 【서식 1】 - 목표와 세부활동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함 (구직활동계획서의 경우, 지원자로 선정된 이후 재작성함)
	근로계약서	* 공고일 전 발급분 인정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주36시간 미만 근로인 경우 제출 - 근로시간 및 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국민취업지원제도 선발 제외 대상 증빙서류	* 공고일 전 발급분 인정 - 만18세~34세 청년 중 기준중위소득이 120% 이하지만 재산기준 미달 및 공무원 시험 준비 등으로 정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선발이 제외된 대상은 관련 증빙서류 (불인정 통지서와 최근 1년간 공무원 시험 접수증 모두) 제출 필수 ※증빙자료 미제출자는 탈락 처리

< 제출서류 관련 유의사항 >

- **제출서류는 공고일(23.6.2) 이후 발급분만 인정함**
 √ 제출서류 발급 방법은 【붙임 3】 참조
- **제출서류는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한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jpg, pdf파일만 첨부 가능)**
 √ **PC화면을 사진 찍어 제출하는 경우는 불인정** 되오니, **반드시 출력본을 사진찍거나 스캔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2개 이상 파일을 첨부할 경우엔 압축파일로 올리시면 됩니다.**
- **가구소득 산정 관련하여 형제·자매 등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 【붙임 1】 을 참조하여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추가 제출**
- **제출자료로 심사가 어려울 경우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선정기준

항 목	심 사 방 법
주소지	신청일 이전,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인지 확인
나 이	모집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연령이 만18세~만39세인지 확인
졸 업	신청일 기준, 최종학력 졸업(중퇴) 및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인지 확인
미취업상태	신청일 기준, 미취업상태인지 확인 - 주36시간 이상 근로의 경우 취업자로 간주 - 사업자등록증이 있을 경우 창업자로 간주 * 주36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할 경우, 근로계약서 제출 필수
가구소득	가구의 건강보험료 서류를 통해 공고일 전 3개월(23년 3월~5월) 가구의 평균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납부(부과)액 합산 금액과 연령별 가구소득 산정표(건강보험료)를 비교하여 확인

○ 최종선정: 선정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심사하여 대상자 선정

※ 심사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제출서류 보완 및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담당자의 요청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엔 최종 서류 미비 처리됩니다.

6. 지원 대상자 발표 및 예비교육

○ 지원 대상자 발표

- 일시 : 2023. 7. 10.(월) (예정) *심사 기간에 따라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음
- 방법 : 강원일자리정보망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 및 개별 문자 발송

○ 3차 지원 대상자 지원기간 : 23년 7월~23년 12월(6개월)

< 포인트 환급 관련 유의사항 >

- 재단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23년 9월에 승인된 환급금의 10월 입금이 지연될 수 있음
- ※ 상황에 따라 환급 사항은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선발대상자에게 세부사항 공지 예정

○ 예비교육

- 일시 : 2023. 7. 17.(월) (예정) * 선정된 지원대상자 전원 필수 참석
- 방법 : ZOOM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
- 내용 : 지원사업 목적 및 사업 운영 매뉴얼, 쿠폰(지원금) 사용방법, 참여자 필수 이행사항 안내 등

7.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 신청 전, 강원일자리정보망에서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을 필수로 하시기 바랍니다. 구직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타 유사사업과 중복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 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의 착오·누락, 허위 기재, 연락 불능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재사항과 제출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 신청 시, PC 사용을 권장합니다. 모바일 사용 시 기재사항과 첨부파일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의 수정은 신청기한 내 가능하며, 제출된 서류에 대해선 순차적으로 심사합니다. 사업 담당자는 심사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담당자의 요청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엔 탈락 처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 제외 대상(타사업 중복, 재학, 취창업자 등)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지원 중단 및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졸업예정자의 경우 지원금 수급 중, 졸업을 유예하여 졸업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지원금을 환수처리 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의 의무사항 불이행 또는 지원금 사용기준에 부적합하게 사용 시엔 지원 중단 및 선정취소,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종료 후 5년 이내 위의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도 환수 규정이 적용 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정부사업 참여자는 본 사업 참여로 인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서비스 제한, 급여액 삭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본 사업 참여로 인해 타지자체 등의 유사 사업에 대한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 사업 운영 시, 재단의 사정에 따라 구직활동보고서, 환급, 정산 등의 운영 일정이 변동 또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는 사업 신청 후 대상자 선정 공고 전에 취·창업을 하게 된 경우엔 반드시 재단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공고 전에 취·창업이 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본 공고사항은 재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재공고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 신청서류 및 구비(첨부)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원도일자리재단 청년어르신사업부 (033-256-9575, 9578, 9579)로 문의 바랍니다.

【서식 1】 * 온라인으로 작성

(아래는 참고 서식이며, 온라인에서 신청서 작성 시 쓰시면 됩니다.)

구 직 활 동 계 획 서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주소		연락처	
구직활동 개요	* 구직목표 및 신청동기, 목표 달성을 위해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기술		
구직활동 계획	목표1		
	세부계획1		
	세부계획2		
	세부계획3		
	목표2		
	세부계획1		
	세부계획2		
	세부계획3		
	목표3		
	세부계획1		
	세부계획2		
	세부계획3		
	목표4		
	세부계획1		
	세부계획2		
	세부계획3		
구직활동 지원금 사용계획	※ 구직목표 달성 위한 지원금의 주요 사용처 및 용도 기재		

※ 본 구직활동계획서는 정성평가 평가항목이기에 신중하게 작성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본 사업 참여자와의 상담, 대상자 선정 및 심사, 지원금지급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필요시 강원도일자리재단, 강원도, 정부부처, 사업진행과 관련된 금융기관 또는 협력기관에 개인정보가 공유될 수 있습니다.
-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직업 등 이력사항, 연락처번호, 가족사항, 경력, 건강보험증 번호,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 건강보험 자격, 재산상황 등
-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관련 업무 종료일까지 사업목적에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강원도, 강원도일자리재단, 정부부처, 건강보험공단, 농협은행, (주)현대이시웰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 가입 여부, 건강보험료, 가족 피부양자 여부, 재산,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사업」 및 정부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관리 등
-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국민건강보험(가입여부, 건강보험증 번호, 건강보험료, 수급자 인원, 지역 및 직장가입 구분) 현황,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등
-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관련 업무 종료일까지 사업목적에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사업」신청·선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와 귀하 가족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제43조의2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 선정이 부득이하게 제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명	관계	1.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확인(서명)
	본인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부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모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서식 3】

가구원 관계단절 본인 소명서

신청인 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연락처	
관계단절 내용·사유	
본인은 위 내용과 같이 부/모/배우자와 관계가 단절되어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고 있으며, 이에 개인정보제공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태임을 확인합니다. 만약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관련 규정에 의해 환수 및 추가징수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첨부서류 : 관계단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서식 4】

가구원 관계단절 사실 확인서

신청인 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연락처	
확인자 명 (민법 제777조상 친족의 범위내)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참여자와의 관계	
관계단절 내용,사유	
확인자()는 위 내용과 같이 신청자가 부/모/배우자와 관계가 단절되어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고 있으며, 이에 개인정보제공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태임을 확인합니다. 신청자()는 만약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관련 규정에 의해 환수 및 추가징수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확인자 : (인)	
첨부서류 : 확인자 신분증(뒷자리 가리고 첨부), 관계단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붙임 1】 가구소득 세부 산정 방식

■ 가구소득 산정방법

○ 미혼일 경우

- (원칙) 가구원 수 및 소득 확인 범위 모두 “기본 3인(부·모·본인)”

- *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포함 여부 선택(포함 시 가구원수+소득에 모두 추가)
- * 가구원수 산정에 조부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확인) 가구원 수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소득은 공고일 전 3개월분 가구원의 건강보험 평균 납입액(부과액)과 자격을 통해 확인

- 사례별 예시

① 부모가 모두 있는 경우 [가구원 수 3인]

→ 부+모+본인 건강보험료 확인

* 가구소득 산정(예)

- 부 : 공고일 전 3개월 평균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 155,000원 납부
- 모 : 공고일 전 3개월 평균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 40,000원 납부
- 본인(만30세) : 부의 피부양자로 22.1.1자 자격 취득

(계산) 부(직장) 155,000원 + 모(지역) 40,000원 = 195,000원

-> 만18세~만34세 가구원수 3인 기준(혼합) 금액표와 비교하여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에 해당되므로 가구소득 적합

② 한부모 가정인 경우(사별·이혼 등 불문) [가구원 수 2인]

→ 실제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 본인 건강보험료 확인

*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건강보험 납부액 또는 자격 등

③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가구원 수 1인]

→ 본인 건강보험료 확인

*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건강보험 납부액 또는 자격 등

④ 부·모·본인이 형제·자매 등의 피부양자인 경우 [가구원 수 4인 이상]

→ 부·모·본인 + 형제·자매의 건강보험료 합산 확인

*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본인+형제·자매의 건강보험 납부액 또는 자격 등

※ 위의 모든 경우에서, 형제·자매 추가를 원할 경우

- 1) 가구원 수에 형제·자매의 수를 더하고,
- 2) 소득에 형제·자매의 건강보험료를 더함

* 단, 형제·자매가 부모·본인 이외의 자의 피부양자일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 기혼일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와 동거 중인지, 아니면 별도의 가구로 독립해 배우자 및 자녀와 동거 중인지에 따라 달리 산정
- (동거 중인 경우) 가구원 수 4인(부·모·본인·배우자)+자녀 수로 하고, 소득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본인+배우자 확인
- (독립한 경우) 가구원 수는 2인(본인·배우자)로 하고(자녀가 있는 경우는 가구원 수 추가), 소득은 “본인+배우자” 확인
- (확인)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은 공고일 전 3개월분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평균 납입액(부과액)을 통해 확인

- 사례별 예시

①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와 동거 중인 경우 [가구원 수 4인+자녀수]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본인+배우자의 건강보험료 합산 확인

- *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부모와 동거 여부 확인),
부·모+본인+배우자의 건강보험 납부액 또는 자격

※ 위의 경우에서, 형제·자매 추가를 원할 경우

- 1) 가구원 수에 형제·자매의 수를 더하고,
- 2) 소득에 형제·자매의 건강보험료를 더함

* 단, 형제·자매가 부모·본인 이외의 자의 피부양자일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② 독립한 경우 [가구원 수 2인 + 자녀수]

→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확인

- *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납부액 또는 자격

* 가구소득 산정(예)

- 배우자 : 공고일 전 3개월 평균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 130,000원 납부

- 본인(만36세) :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2015.3.5.자 자격 취득

- 자녀 2명 : 출생 이후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자격 취득

(계산) 가구원수 : 4인 / 소득 : 배우자(직장) 130,000원

-> 만35세~39세 가구원수 4인 기준(직장) 금액표와 비교하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되므로 가구소득 적합

○ 부 또는 모와의 관계단절로 개인정보제공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 (원칙)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는 것이 증빙 가능한 경우 가구소득 산정대상 가구원에서 제외

* 관계 단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서식 3】 본인 소명서와 【서식 4】 사실확인서를 제출

* 주거를 달리함은 주민등록등본상 동일세대가 아님으로 증빙하고, 생계를 달리함은 건강보험이 분리되어 있어야 인정 가능

- 사례별 예시

① 이혼소송 중으로 사실상 부 또는 모와 관계단절

→ 이혼소송·심판 서류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세대 아님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상 피부양 관계단절

② 교도소 등 수감으로 관계단절

→ 수용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상 피부양 관계단절(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될 필요 없음)

③ 부모가 사실상 이혼하였고 부 또는 모와 관계단절

→ 본인소명서 + 조부모 등 민법상 친족의 사실확인서(신분증 사본 첨부)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아님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상 피부양 관계단절

④ 오래전부터 부모와 관계가 단절되어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 경우

→ 본인소명서 + 조부모 등 민법상 친족의 사실확인서(신분증 사본 첨부) + 주민등록초본상 지원금 신청가능 나이(만17세) 이전에 세대가 분리되었음을 확인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상 피부양 관계단절

【붙임 2】 가족관계증명 관련 사례별 구비서류 목록

결혼	부	모	제출서류	비고
미혼	생존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생존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주민등록등본 ^{주3)}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5)}	
	생존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	
	생존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부)+실종 등 서류 ^{주1)}	
	생존	재외국민·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주2)}	
	이혼 후 관계단절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민등록등본 ^{주3)}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5)} +주민등록초본 ^{주6)}	폐쇄인정 ^{주4)}
	이혼 후 관계단절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민등록등본 ^{주3)}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5)} +주민등록초본 ^{주5)} +주민등록초본 ^{주6)}	
	이혼 후 관계단절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부+모)+실종 등 서류 ^{주1)} +주민등록등본 ^{주3)}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5)} + 주민등록초본 ^{주6)}	
	이혼 후 관계단절	재외국민·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가족관계증명서(본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5)}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주2)} +주민등록초본 ^{주6)}	
	사망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민등록등본 ^{주3)}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5)} +주민등록초본 ^{주6)}	폐쇄인정 ^{주4)}
	사망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사망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부)+실종 등 서류 ^{주1)}	폐쇄인정 ^{주4)}
	사망	재외국민·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주2)}	폐쇄인정 ^{주4)}
	재외국민· 외국인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모)+가족관계증명서(본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5)}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주2)} +주민등록초본 ^{주6)}	
	재외국민· 외국인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주2)}	폐쇄인정 ^{주4)}
	재외국민· 외국인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모)+실종 등 서류 ^{주1)} +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주2)}	
	재외국민·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본인)+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주2)}	
	실종 등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실종 등 서류 ^{주1)}	폐쇄인정 ^{주4)}
	실종 등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본인)+실종 등 서류 ^{주1)}	
	이혼소송으 로 관계단절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주민등록등본 ^{주3)}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5)} +이혼소송·심판 확인가능 서류	
	사실상이혼 등으로 관계단절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주민등록등본 ^{주3)}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5)} +민법상 친족의 사실확인서+본인 소명서	
	오래전부터 관계단절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5)} 민법상 친족의 사실확인서+주민등록초본 ^{주6)} +본인 소명서	

결혼	부	모	제출서류	비고
기혼	배우자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배우자와 이혼 후 관계단절		혼인관계증명서(본인)+주민등록등본 ^{주3)}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5)} +본인 소명서	
	배우자와 이혼소송 중으로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본인)+주민등록등본 ^{주3)} +이혼소송·심 판 확인가능 서류+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5)}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으로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본인)+주민등록등본 ^{주3)}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5)} +민법상 친족의 사실확인서+본인 소명서	
	배우자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본인)+혼인관계증명서(본인) ^{주7)}	
	배우자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본인)+실종 등 서류 ^{주1)} +본인 소명서	
	배우자가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본인)+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주2)}	

※ 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발급: '민원24(minwon.go.kr), 대법원(efamily.scourt.go.kr)

※ 관계단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서식4) 가구원 관계단절 본인소명서는 반드시 모두 제출

※ '07.12.31 이전 사망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체하여 제적등본 제출 필요
(‘전호주와의 관계’ 및 ‘호주승계사유’를 통해 가구원 사망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사망 인정)

주1) 실종·수감 등 서류: 가출·행방불명·실종 신고접수증(경찰서), 실종·부재 신고 신고증(법원), 군
복무확인서(군부대), 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법원), 거주불명자등(초)본, 수용증명서(교정기관)

주2)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① 재외국민(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② 외국인(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
거소사실증명원, 여권사본, 출입국사실증명원 또는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포함))

주3) 주민등록등본: '본인 단독세대주' 또는 '가구원과 동일세대' 여부 확인필요

주4) 폐쇄인정: 사망자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서류상 '폐쇄'가 기입되어, 사망 확인 가능

주5)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부모 모두로부터 경제적 단절을 주장하는 경우, 본인을 포함한 해당
건강보험가입자가 모두 표시된 서류 접수·확인(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무료발급)

주6)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이력과 세대주와의 관계가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주소변동이력 및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주7)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배우자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 제출서류에서 제외 가능

【붙임 3】 제출서류 발급 방법

■ 제출서류 발급 방법

목 록	발급방법
주민등록 등·초본	·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 · 주민센터(무인발급기)
가족관계증명서 등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 주민센터(무인발급기) ·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하면 부,모 함께 나옴 (형제, 자매까지 모두 나오려면 부(또는 모) 기준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 관련 사례에 해당 될 경우엔 [붙임2] 참조하여 발급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 · 온라인 발급 : 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회원가입 → 방문자별 맞춤메뉴(개인) → 조회 및 발급 → 자격확인서 또는 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 스마트폰 앱 이용 : “The건강보험”앱설치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민원서비스 이용 · 주민센터(무인발급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용)이력 내역서	·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발급 ※ 개인/일반근로자 공인인증서 로그인 → 증명서 신청/발급 →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선택[보험구분:고용/조회구분:상용] 후 조회 (상세문의:1588-0075)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이용 팩스발급 : 1588-0075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경우 : 이력서 출력 누른 후 해당 내용이 없다는 이력내역서 첨부(반드시 인적사항과 발급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졸업·제적 증명서	· 정부민원포털 정부24 (www.gov.kr) · 주민센터(무인발급기) · 해당학교 내 증명서 발급·관리부서 등 ·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검정고시 합격증명을 발급

※ 무인발급기 이용 제출서류 발급 시 지문인식 절차가 필요하므로 당사자
(본인·부·모·배우자 등)의 방문이 필요합니다.